

판례를 통해 본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의 관리

이 보 립*

요 약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 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I. 서 론

방위산업은 기계, 전자, 통신 등 산업 전(全)분야에 걸쳐서 특히 국방력 형성에 주요요소인 무기·장비를 생산하는 목적과 관련 있는 산업이다. 즉 방위산업은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1].

첨단기술이 요구되고, 자본집약적인 방위산업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산기술’이라고 한다)이라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만들어 낸다. 방산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산업보안관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① 우선 방산기술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② 실제 사안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고 한다.)를 통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보호제도

2.1. 의의 및 적용 가부·실익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방위산업체는 연구개발과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층이 군 또는 정부라는 점 외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므로, 방산기술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산기술을 보호하는 법적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대위무역법」, 「방위사업법」, 「군가시기밀보호법」,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에 141개 방위산업이 지정·고시 되었으며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관련된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등이 있다[2].

아래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방산기술의 독자적 규범체계인 방산기술보호법과 비교를 하면서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2.2. 목적

영업비밀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의 주된 보호법의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각 법 제1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해보면, 방산기술보호법은 ‘국가적 법익’을, 영업비밀보호법은 전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적·개인적 법익’을 주된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brl@kipi.or.kr)

보호대상으로 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제1조(목적)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전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산기술보호법 제1조(목적)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침해시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제절차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방산기술보호법은 사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 것도 국가적 법의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각 법의 목적 및 보호법의

	목적(제1조)	주된 보호법의
영업비밀보호법	전전할 거래질서 등	사회적·개인적 법익
방산기술보호법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적 법익

(표 2) 각 법의 보호대상 침해시, 법적효과

	민사청구	형사제재
영업비밀보호법	금지청구(제10조) 손해배상청구(제11조)	별칙(제18조)
방산기술보호법	X	별칙(제21조)

2.3.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에 의하면,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여 아니하고는 정보

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참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 선고 2016가합54329판결에 의하면, “개정된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비밀유지성)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 인적·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에 반하여 방산기술보호법상 방산기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아닌 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 기술이어야 하고 ②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③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를 하였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표 3) 각 법의 보호대상

	정보의 속성	공시(公示)
영업비밀보호법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산업관련 국방과학기술, 국가안보상 보호필요성	방위사업청장 지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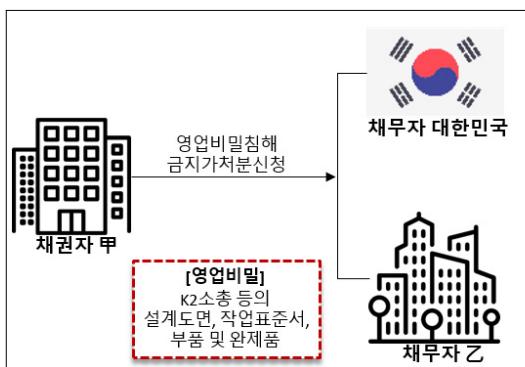
2.4 방산기술 관련 영업비밀 쟁점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부정취득유형(가~다목)과 비밀유지의 무위반 유형(라~바목)으로 구분된다. 형사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누설, 공개행위이다. 방산기술관련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비밀유지의무 존부 및 정도가 특히 문제된다. 이는 아래에서 대상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달리 방산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술정보의 귀속에 관한 쟁점이 부각된다. 이 또한 아래에서 대상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 80727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그림 1] 대상판결 사실관계

3.1. 사안의 개요

채권자(이하, ‘甲’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에 K2소총을 제작하여 납품해 온 방산업체이다. K2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하였고, 1984. 12. 18. 최초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경부터 甲은 대한민국과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K2소총을 제작·납품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수차례 K2 소총 형상변경이 있었고, 2016. 7. 22. 경에는 K2C1소총으로 성능개량과 함께 국방규격도 개정되었다.

甲과 대한민국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2014. 6. 18. 물품구매계약(K2소총) 및 2015. 12. 31. 물품구매계약

(K21소총)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각 계약서에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과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었다.

甲은 대한민국에서 K2, K2C1 소총의 국방규격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이 사건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였다.

채무자 乙(이하, ‘乙’이라고 한다)은 2016. 11. 14. 경 대한민국에게 입찰절차 참가를 위하여 위 소총 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대한민국은 2016. 12. 5. 乙에게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하였다.

- 1984. 12. 18. 최초 국방규격(K2 소총) 제정
- 1985.~ 甲과 대한민국 매년 K2 수의계약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요구로 수차례 형상변경)
- 2016. 7. 22. 성능개량(K2C1, 국방규격 개정)
- 甲과 대한민국,
- 2014. 6. 18. 물품구매계약(K2) 체결
- 2015. 12. 31. 물품구매계약(K2C1) 체결

3.2. 법적 쟁점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도면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1)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도면에 담긴 기술정보의 소유관계, ② 대한민국이 甲승낙없이 乙에게 이 사건도면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③ 계약상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2)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3. 이 사건 도면에 담긴 기술정보의 소유관계

법원은 대한민국이 甲과 함께 K2, K2C1 소총에 관한 공동개발자로서 이 사건 도면에 담긴 기술정보를 공동소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한다.

그 근거로 ① K2 소총이 최초 대한민국(국방과학연구소)이 주도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었고, 그 후 K2 소총 성능개선과 K2C1 소총 개발도 대한민국 주도의 K2 소총 양산화사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점, ② 채권자는 대한민국과 수의 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의 요구조건이 반영된 소총을 제작·납품하였고, 국방규격

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까지 대한민국에 제공해온 점, ③ K2C1소총은 일반재산계약 형태로 체결되어 개발비용 상당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였고, 대한민국은 甲으로부터 甲이 외국으로 수출한 K2C소총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받기도 한 점, ④ 甲과 대한민국이 K2C 소총 관련 발명에 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약정한 점(각지분 50%)을 들고 있다.

3.4. 대한민국의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할 권한

법원은 대한민국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乙에게 甲의 승낙없이 국방규격으로 정해진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① 甲과 대한민국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방위사업관리규정도 계약이 내용을 이루는데, 위 규정의 제605조 제6항 제2호 방위산업규정 제605조 제6항 제2호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가 적용된다는 점(현재 해당조항인 방위사업청훈령 제432호, 2018. 2. 20.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부터 제605조는 삭제되었다.), ② 국방규격은 군수품 규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희득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방위사업법 제26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5조 제6항), ③ 甲이 이 사건 도면이 국방규격으로 관리됨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제출하였고, 중요기술정보를 이 사건 도면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유보없이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하였으므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들고 있다.

3.5. 물품구매계약 및 동 계약조건에 관하여

첫째, 법원은 물품구매계약조건 등에 따라 甲과 대한민국의 공동소유라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

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조건을 들고 있다.

둘째, 법원은 공유자인 대한민국은 甲의 동의없이 이 사건 도면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고 있다.

셋째, 법원은 물품구매계약조건이 약관이더라도 ① 甲이 수십 년간 군수품을 납품해 온 중견기업이라는 점, ②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획재정부가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예규로 정한 것으로서 국가와 체결한 대부분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별도의 설명없었던 경우에도 충분히 물품구매계약일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3.6.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결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대한민국과 방산업체의 공동소유라는 점 ②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점 ③ 계약 및 동조건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요건인 ‘대한민국이 비밀유지의무자인지’의 ‘대한민국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3.7. 보전의 필요성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① 국방규격에 영업비밀 포함된 경우 국가가 이를 활용하여 군수품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면, 이는 사실상 자신의 영업비밀을 국방규격에 포함시킨 특정업체와 영구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설사 영업비밀이 침해될지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군수품 조달 업무를 정시시키는 것은 군수품이 군에 적기에 보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③ 甲은 본안 판결에서 영업비밀의 침해를 인정받게 되면 금전으로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만족적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甲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IV. 대상결정의 평석

4.1. 국방규격이 담고 있는 기술 정보 귀속주체

법원은 대상판결에서 ① 연구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 ②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채권자의 역할, ③ 비용부담 및 기술료 지급관계, ④ 물품구매계약 및 동 계약조건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대한민국과 방위산업체의 공유라고 삼고 있다.

대상판결과 달리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2924 판결(이하, ‘2014노2924판결’이라고 한다.)에서는 기술정보의 귀속주체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방규격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권리귀속관계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국방규격인 설계도면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체가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한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① 개발비용 및 위험부담 주체 ② 개발개획서상 지적소유권의 귀속 ③ 방위산업관리규정, 국방과학기술 정보 관리업무 지침,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사업법, 국방획득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등 국방관련 법령의 관계규정은 내부적 효력만 있는 행정규칙이거나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므로 개발자(방위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수의계약의 성격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의 민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 2009569 판결에서 대한민국과 방산업체가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과 2014노2924판결을 비교하여 보면, 각 해당 사실관계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인 ‘기술정보’의 귀속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① 위 기술정보가 국방규격인 경우 규정 및 계약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에도 권리가

있다. ② 다만, 대한민국에 그와 같이 권리가 귀속한다고 해서 방위사업체의 위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4.2. 국방규격 외의 자료가 담고 있는 기술정보

대상판결에서는 K2소총 등의 ‘설계도면’과 ‘작업표준서, 완제품·부품’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노2924판결에서 국방규격에 관한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라 단안형 야간투시경 N모델 ‘설계도면’만 국방규격에 해당하고, 제품·용역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절차·방법을 서술한 ‘작업표준서’, 문서가 아닌 ‘완제품·부품’은 국방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정보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위 국방규격이 아닌, 작업표준서, 완제품·부품은 방산업체의 소유로 보았다. 즉, ‘작업표준서, 완제품·부품’에 관한 정보와 ‘설계도면’에 관한 정보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3. 대한민국의 국방규격을 공개할 권리

법원은 대상판결에서 ① 물품구매계약, 방위사업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국방규격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② 방위산업체가 국방규격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여 영업비밀로 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국방규격을 일정 요건을 구비한 제3자에게 국방규격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2014노2924판결에 의하면, ① 국방규격업무편람상 낙찰자(인적재원) 열람(행위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해당사건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② 행정규칙에 열람 근거가 있더라도 이는 내부적 구속력 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일종 ‘대한민국이 제3자에게 국방규격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대상판결과 ‘대한민국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라는 2014노2924판결은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2014노2924판결에 의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일정요건을 구비한 방산업체에 해당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두 판결은 대

한민국이 소송의 상대방인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그리고 침해된 영업비밀의 유형 등이 오히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소결

대상판결에서는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방규격 관련 기술정보는 방산업체와 대한민국의 공유라는 점을 재차확인하고, 대한민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규격을 일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V. 결 론

이상으로 방산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과 영업비밀로 보호할 경우 주된 생점사항을 살펴보았다.

방산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실익은 첫째 보호목적의 측면에서 방산기술의 국가안보적 관점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및 경제자원적 관점에서 보호받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 둘째 영업비밀보호법은 비교적 보호대상이 광범위하고,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한다는 점, 셋째 해당 기술이 보호대상이 해당하는지 공시(公示)함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적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방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한다. 즉 방위사업청장의 지정·고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되고, 변경·해제될 수 있다는 점, 방산기술이 도출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험데이터, 경영상 정보, 부품·완제품 등은 국방과학 기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방산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방산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실익이 존재한다.

방산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할 경우, 일반 영업비밀과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관련 규정상 공개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특히 표준화업무지침, 방위사업청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국방규격업무편람 등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해당기술을 이용한 영업상 이익과 관련하여 계약상 기술정보의 귀속주체,

비용 및 위험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국방규격 등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보 외에 특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수,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산업보안연구 학회지 2(2), pp. 54-55, 2011.
- [2] 윤홍수, 류연승, ‘흔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7), pp 243, July 2018.

〈저 자 소 개〉



이 보 람 (Lee Bo Ram)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7년 2월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2018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018년 2월 ~ 현재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관심분야: 특허, 영업비밀, 산업보안, 방위산업